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0832 조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26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09. 7. 1. 사업장 소재지를 '[redacted] [redacted]구 B, 3층'으로, 상호를 'C'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8

로,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위탁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 : [redacted]세무서 D)이 마쳐졌다가 2011. 6. 21. 폐업신고가 수리되었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에 표시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장인 피고에게 2011. 5. 3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2010년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 2,296,304원, 세액 265,59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으로 하는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납부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9. 10.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일을 2011. 9. 30.으로 정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에 관한 징수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 2011. 11. 17.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징수결정문을 발송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납부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2., 2014. 4. 15., 2014. 5. 15.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265,590원 및 그 가산금 8,21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위 각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독촉 고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초 이 사건 각 독촉 고지가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4. 3. 12., 2014. 4. 15.,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282,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으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신고서 제출일에 조세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26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이 사건 징수결정이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2011. 9. 10. 원고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8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26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소외 E이므로 위 징수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징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이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이 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신고납부) 제2항 본문은,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신고가 있었음은 앞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8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결정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이처럼 이 사건 소가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